


의정활동보고서



제282회 임시회(2016. 1. 22 ~ 2. 1)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의 첫 회기인 제282회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도민 모두의 가정마다 소망하시는 일이 성취되고 늘
웃음이 묻어나는 행복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경상북도의회는 대내외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도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 속에서 경상
북도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조하는 한편,

잘못되거나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더 낮은 자세로 삶의 현장을 지키면서 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다음 달이면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터전에서 우리 경북이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3백만 도민이 더욱 단합하고 화합하여 경북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하게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신도청시대를 위해 신도시의 조기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 등 미래지향적이면서 중장기적인 맞춤형 발전 전략 수립과 도민화합의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에서도 전 의원이 합심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도 항상 그래왔듯이 아낌없는 협조와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도에서는 4월에 있을 20대 총선, 설맞이

민생안정대책, 구제역 차단 등 당면사항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 누리과정을 비롯한 유아교육, 역사 교과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등 현안사항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는 집행부의 2016년도 새해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신도청시대의 미래전략과 균형발전 등 다양한 정책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정책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잘 살펴보시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기가 산격청사에서 마지막 회기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계속해서 금년에도 의원님들과의 소통과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3백만 도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차 례

I. 개 황	9
II. 의사일정	12
III. 의안처리	17
IV. 민원처리	18
V. 본회의 보고사항	20
VI. 5분 자유발언	23
□ 이상구 의원(문화환경위원회)	23

부 록

☐ 조	례	안(11건)		29
☐ 수	정	안(2건)		112
☐ 동	의	안(1건)		122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82회 임시회는 2016년 1월 22일 오후 2시에 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월 1일까지 11일간의 회기동안 2차의 본회의와 8회에 걸친 상임위원회 및 1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1월 22일(금)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일반사항 보고를 마친 후 포항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상구 의원의 『팔공산 종주등산로 개설 및 둘레길의 성공적 조성 관련』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이어서 「제28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2차 본회의는 2월 1일(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상정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일 부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후 원안대로 의결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 심사보고후 원안대로 의결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 문화환경위원회 이진락 부위원장 심사 보고후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의결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고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수정안대로 의결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 농수산위원회 안희영 부위원장의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후 원안대로 의결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건설소방위원회 박용선 부위원장의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후 원안대로 의결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변경고시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 교육위원회 김종영 부위원장 심사보고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그 외 4건은 원안대로 의결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11일간 열린 임시회는 산격동 청사에서의 마지막 회기로 집행부의 2016년도 새해 업무보고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번 업무보고는 신도청 시대의 미래전략과 균형발전 등 다양한 정책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정책방향이 제대로 설정 되었는지 잘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산격청사에서 마지막 회기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와 함께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과의 소통과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를 다하는 회기가 되었다.

다음 회기는 제283회 임시회로 안동 신청사에서 2016년 3월 14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를 약속하고 산회를 선포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 가. 집회구분 : 임시회
-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 다. 집회일시 : 2016년 1월 22일(금) 14:00

2. 회 기

- 가. 회의기간 : 2016년 1월 22일 ~ 2월 1일(11일간)
-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38회)
 - 위원회

(단위 : 횟수)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정 보건 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9	1	2	1	1	1	1	1	·	1
누 계	208	15	28	29	24	21	22	22	34	13

※ 누계는 제10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22(금) 14:00 (제1차)	☐ 5분 자유발언 ○ 이상구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안전처리 ○ 제28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2.1(월) 11:00 (제2차)	☐ 안전처리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포항시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변경 고시안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22(금) 본회의 산회 후 (제1차)	☐ 안전심사 ☐ 제283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2016년 주요업무보고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25(월) 11:00 (제1차)	☐ 2016년 주요업무보고 ☐ 안전심사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6(화) 11:00 (제2차)	☐ 2016년 주요업무보고 ☐ 안전심사 ☐ 경상북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26(화) 10:00 (제1차)	☐ 2016년 주요업무보고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25(월) 11:00 (제1차)	☐ 2016년 주요업무보고 ☐ 안전심사 ☐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6(화) 11:00 (제2차)	☐ 2016년 주요업무보고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25(월) 11:00 (제1차)	☐ 2016년 주요업무보고 ☐ 안전심사 ☐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6(화) 11:00 (제2차)	☐ 2016년 주요업무보고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25(월) 10:30 (제1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16년 주요업무보고	
1.26(화) 15:00 (제2차)	☐ 2016년 주요업무보고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25(월) 13:30 (제1차)	☐ 2016년 주요업무보고 ☐ 안전심사 ○ 경상북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변경 고시안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22(금) 11:00 (제1차)	☐ 2016년 주요업무보고	

Ⅲ. 의안처리

※ ()내는 제10대 의회 누계임

구 분		접 수 (부의)	처 리 (가+나+대)	처리(의결)					철회 (나)	보류 (다)	비고
				계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16 (318)	12 (318)	12 (313)	14 (274)	2 (37)	(2)				
조 례 안	소 계	12 (198)	12 (198)	12 (193)	10 (169)	2 (22)	0 (2)		0 (4)	0 (1)	
	의 회 제 안	4 (96)	4 (96)	4 (93)	3 (83)	1 (10)			(2)	(1)	
	도지사 제 출	4 (71)	4 (71)	4 (71)	4 (62)	(9)					
	교육감 제 출	4 (31)	4 (31)	4 (29)	3 (24)	1 (3)	0 (2)		0 (2)		
규 칙 안		0 (2)	0 (2)	0 (2)	0 (2)						
예산·결산		0 (17)	0 (17)	0 (17)	0 (8)	0 (9)					
동의·승인		1 (22)	1 (22)	1 (22)	1 (16)	0 (6)					
건 의 안		0 (1)	0 (1)	0 (1)	0 (1)						
결 의 안		0 (15)	0 (15)	0 (15)	0 (15)						
기 타 안		3 (63)	3 (63)	3 (63)	3 (63)						

IV. 민원처리

1. 청 원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 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		.	.	
누 계	3		3	3	

※ 누계는 제10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단위 : 건)

위원회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2 (52)	2 (29)	(4)	(2)	11 (6)	(2)	(4)	(3)		(2)
의 회 운 영	1 (1)	1 (1)								
기 경 획 제	(2)						(2)			
행 정 보건복지	(10)	(4)	(4)		(1)		(1)			
문 화 환 경	(6)	(5)						(1)		
농 수 산	(3)	(2)					(1)			
건 설 소 방	1 (21)	(11)		(2)	1 (5)			(2)		(1)
교 육	1 (8)	1 (5)				(2)				(1)
특 별 위 원 회	1 (1)	1 (1)								

※ 누계는 제10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단위 : 건)

위 원 회	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2 (51)	2 (51)				1
의회운영	1 (1)	1 (1)				
기획경제	(2)	(2)				
행 정 보건복지	(10)	(10)				
문화환경	(6)	(6)				
농 수 산	(3)	(3)				
건설소방	(20)	(20)				1
교 육	1 (8)	1 (8)				
특별위원회	(1)	(1)				

※ 누계는 제10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 12건

- 조례안 11, 동의안 1

2. 처리안건 : 12건

- 가결 12건 - 조례안 11, 동의안 1

3. 위원회 및 의원발의 조례안 : 3건

-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2016. 1. 11, 이진락 의원 외 8명)
-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 1. 11, 이운식 의원 외 10명)
-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 1. 25, 농수산위원회)

4. 의안접수 내용 : 조례안 11건, 동의안 1

제출(발의)자 (접 수 일)	의 안 명	소 관 상임위원회
도 지 사 (2016.1.11)	경상북도 유통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기획경제 위 원 회
도 지 사 (2016.1.1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락 의원 외 8명 (2016.1.11)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 위 원 회
이운식 의원 외 10명 (2016.1.11)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16.1.11)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위원회 (2016.1.25)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농 수 산 위 원 회
도지사 (2016.1.11)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 위 원 회
교육감 (2016.1.11)	경상북도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교육감 (2016.1.11)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교육감 (2016.1.11)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교육감 (2016.1.1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교육감 (2016.1.11)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변경 고시안	

5. 조례공포 사항 : 11건

이송일	이송처	건 명	공포일
2016.2.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2.15 (제3748호)
〃	〃	경상북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제3749호)
〃	〃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3750호)
〃	〃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3751호)
〃	〃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3752호)
〃	〃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제3753호)
〃	〃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제3754호)
2016.2.2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16.2.18 (제3755호)
〃	〃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3756호)
〃	〃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3757호)
〃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3758호)

VI. 5분 자유발언

□ 2016년 1월 22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이상구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 팔공산 종주등산로 개설 및 둘레길의 성공적 조성 관련 》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이상구 의원입니다.

신청사로 이전을 목전에 두고 본 청사에서의 마지막 임시회에서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와 대구시 및 5개 시·군이 추진중인 팔공산 둘레길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만든 길이 몇 개나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00개? 200개? 지난 10년 동안 문광부에 등록된 길이 무려 1618개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경상북도에도 143개의 길이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길 조성에 투입하였지만 막상 국민들이 즐겨 찾는 길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몇 개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팔공산에도 이미 올레길, 왕건길, 한티 가는 길이 있고 지금 총 6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7개 지자체장이 함께 만드는 둘레길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둘레길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팔공산의 매력과 강점을 찾아내어 그 강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그 좋은 예가 지리산의 종주길입니다.

지리산은 전국의 산행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25.5km에 달하는 종주등산로를 둘레길과 연계하고 사람들이 종주할 수 있도록 노고단에 숙박 가능한 대피소를 마련하여 지리산 자락은 늘 사람이 붐비고 있습니다.

우리 팔공산 역시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빼어난 풍광과 더불어 진남문, 한티성지, 대울마을, 제2석굴암, 파계사, 부인사, 동화사, 은해사, 수도사 등 유구한 문화자산을 품고 있습니다.

팔공산의 주능선은 가산에서 갯바위에 있는 관문까지 약 22km가 넘습니다. 즉 지리산처럼 봉우리들을 잇는 능선이 일자 형태로 이어져 있어 종주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더군다나 소나무와 암봉이 어우러져 걷기에 더없이 좋은 천혜의 명산입니다. 지금까지 대중교통이 있는

동화사와 동봉을 오르는 이용자들이 가장 많습시다만, 가산과 한티재를 잇는 구간은 대구 쪽과 군위 쪽 양방향으로 탁 터진 조망이 있어 사시사철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팔공산 둘레길을 등산로와 연계한 종주등산로로 확대해야 합니다. 지리산에서 만든 둘레길이 성공적인 것은 무엇보다 먼저 지리산 종주길이 선명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리산 종주길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애환을 희망으로 담아내고 있듯이 우리 팔공산도 종주산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레길의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게 저절로 상승할 것입니다.

둘째, 팔공산 한티재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이를 대피소로 활용하고 기존 버스노선을 한티재 휴게소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리산 성삼재까지 대중교통이 들어가고 노고단에 대피소가 들어섬으로서 지리산은 엄청난 관광객과 등산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존 한티재 휴게소 건물에 복층으로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성동까지 오는 노선 버스가 한티재 휴게소까지 연장되면 파계사나 진남문에서 차를 두고 시작한 등산객들이 하산할 때 버스를 이용하여 편리해짐으로써 산행 인구는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둘레길 및 상가밀집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팔공산도립공원사무소를 한티재 대피소로 이전하여 관리·운영하게 된다면 금상첨화라 생각됩니다.

셋째, 기존 야영장과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가산산성 야영장, 동화야영장, 파계캠핑장, 도학캠핑장 등 다양한 캠핑장이 이미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편의시설들을 종주등산로와 둘레길과 연계하게 되면 수요자들이 더욱 더 폭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팔공산은 산 그 자체가 지닌 천혜의 품격이 지리산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리산보다 더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국민들의 발걸음이 향할 수 있는 명산 중의 명산입니다. 하늘이 준 이 소중한 팔공산의 길들을 종주등산로와 조화롭게 잘 엮어냄으로써 전국 최고의 명품길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 록



- ☐ 조 례 안 : 11건
- ☐ 수 정 안 : 2건
- ☐ 동 의 안 : 1건

二 조 례 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유통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학교교육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2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292명”을 “5,29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975명”을 “1,97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 업 소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직 급 별							
합 계		5,294					-
정 무 직		1					-
일 반 직	소 계	1,840					-
	2 ~ 3급	2	1	1			
	3 급	11	10		1		
	3 ~ 4급	2	2				
	4급	82	60	7	5	9	1
	5급 이하	1,732					-
	전문경력관	11					-
별 정 직	소 계	14					-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0					-
연 구 직	소 계	200					-
	연구관	39			38	1	
	연구사	161					-
지 도 직	소 계	27					-
	지도관	10			10		
	지도사	17					-
소 방 직	소 계	3,169					-
	소방정	21	4		17		
	소방령 이하	3,148					-
교 원	소 계	43					-
	총 장	1			1		
	교 수	31			31		
	조 교	11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29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975명 2. ~ 4. (생략)							제2조(정원의총수)....."5,294명"..... 1. : 1,977명 2. ~ 4. (현행과 같음)						
[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단위 : 명)							[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경제자유 구역청	기관별 직급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경제자유 구역청
합 계	5,292						합 계	5,294					
일반직	소계	1,838					일반직	소계	1,840				
	2~3급	2	1	1				3~4급	2	1	1		
	3급	11	10		1			5급 이하	11	10		1	
	3~4급	2	2				전문 경력관	2	2				
	4급	81	59	7	5	9	4급	82	60	7	5	9	1
	5급 이하	1,731					5급 이하	1,732					
	전문 경력관	11					전문 경력관	11					
연구직	소 계	200					연구직	소 계	200				
	연구관	38			37	1		연구관	39			38	1
	연구사	162						연구사	161				

경상북도 유통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2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유통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유통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른 경상
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경상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조정의 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경상북도 유통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屬)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9개월 이상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분쟁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신청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의 조정·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⑦ 분쟁의 조정·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조정 신청)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군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및 연락처
3.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4. 시·군 위원회의 조정안
5. 시·군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불복 사유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경상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결서

1. 일 시 :
2. 안 건 명 :
3. 의결사항 : (각하, 기각, 인용)으로 표시

결정의견	
부 문 별 조정의견	
「경상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조정의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인) 경상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회 의 례

1. 회의일시 :
2. 회의장소 :
3. 안건명 :
4. 출석위원 : 총명

[illegible]

5. 심의결과 : (각하, 기각, 인용)
6. 위원별 의결내용 및 심사의견

[illegible]

년 월 일

작성(간 사) : (인)

확인(위원장) : (인)

[별지 제3호 서식]

유통분쟁조정신청서

1. 사 건 명 :
2. 신 청 인 : 성 명 ○ ○ ○ (한 자 :)
(또는 신청인대표) 주 소 (연락처:)
3. 상 대 방 : 성 명 ○ ○ ○ (한자 :)
주 소 (연 락 처 :)
4. 조정요청 사항 :
5. 시·군 위원회의 조정안 :
6. 기타 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분쟁의 배경
나. 그간의 경위
다. 피해 및 분쟁내용
라. 기타 조정에 필요한 사항 등
※ 기재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첨내용으로 첨부한다.
7. 입 증 자 료
가. ()부
나. ()부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또는 신청인대표)

경상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2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단체중 경상 북도에”를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단체중 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예술진흥 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관련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조에 따른”으로, “제3조의4 규정에 의한”을 “제3조의4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놀이시설

제20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로 한다.

제26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을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을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 1천분의 7이하”로 한다.

제36조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를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문예진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기타</u> 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3. <u>그 밖에</u> -----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문예진흥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 위원회의 사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u>기타</u> 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 <u>그 밖의</u>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및 여비)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u>예산의 범위 안에서</u>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① ----- ----- <u>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3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u>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u> 1. ~ 3. (생략) 제1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등) <u>① 도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단체중 경상북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단체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직제·회계관련규정 사본</u> <u>2. 법인·단체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영업인·허가나 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u> <u>3. 전년도 결산보고서 및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서)</u>	제13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u>법 제10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등) <u>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단체중 도에 -----</u> <u>-----.</u> <u>②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관련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4. 당해연도 공연·전시계획 및 수지 예산서	〈삭 제〉
5. 최근 2년간 공연·전시작품에 참여한 전문예술인이나 기획자 등의 경력소개서, 공연프로그램 등	〈삭 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문예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삭 제〉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 경우 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부에 지정사실을 기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의2(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의 취소) 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예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의2(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의 취소) ----- 제14조에 따라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6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도지사가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별표1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6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 영 제3조에 따른 ----- ----- 제3 조의4에 따른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위락시설	9. 놀이시설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제20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제20조(기금의 용도) ①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5. 그 밖에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 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문예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 ----- 회계년도마다 회계연도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6조(기능) 기금지원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6조(기능)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 -----
제31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과 설치금액)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과 설치금액) ① -- ----- ----- -----.
1.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u>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u>	1. ----- ----- ----- <u>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u>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u>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u>	2. ----- ----- ----- <u>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 1천분의 7이하</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회의의 운영) ① (생략)	제36조(회의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도지사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전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u>그리 하지 아니한다.</u> ③·④ (생략) 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 -----, ----- ----- 예외로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 -----.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2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 및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일상생활 및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다른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민”이란 「주민등록법」 상 도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인명 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피해액 산정)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 등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4조(피해보상) ①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산정한 연간 총 피해금액의 50%에 대하여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상의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농가의 농외소득이 전체 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2. 법령 등에서 경작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3.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4. 제4조에 따라 해당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등 예산지원을 받은 경우
- 제6조(인명 피해 보상대상) ①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보상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법상 경상북도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2. 농·임업상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을 보상한다.
- 제7조(인명 피해 보상의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4.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5. 치료비의 실제 본인부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 시·군 조례 및 다른 법령에 의해 치료비, 사망위로금 등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 제8조(인명 피해액 산정) 인명 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과 사망으로 인한 위로금으로 한다.
- 제9조(인명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명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지급한다. 다만, 인명 피해를 입은 도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대표에게 지급한다.
- ② 보상 및 사망으로 인한 지원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치료비 : 최대 100만원까지
 2. 사망시 위로금 : 500만원
 3. 치료중 사망시에는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 제10조(인명 피해 보험가입) ①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보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피해 보상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
 4. 피해보상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2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9조(입장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u> <u>1. 전염병 질환자</u> <u>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u> <u>3. 물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u> <u>4. 미풍양속 및 공공시설을 해치거나 타인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u> <u>5. 야생 동·식물 등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등 산림을 훼손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u> <u>6. 기타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삭 제〉
<u>제11조(행위 제한) 자연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u> <u>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들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u>	〈삭 제〉

현행	개정안
2. 술에 취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피해를 주는 행위 4. 각종 물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5. 야생 동·식물 등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6. 각종 자연휴양림 시설물을 오손, 파괴, 이전시키는 행위 7. 기타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2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동물을 적정
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주택·준 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준 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이 3개월 이상인 개를 의미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거나, 도지사가 지정한 유기동물보호를 위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군수가 업무를 위탁한 동물등록대행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하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동물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등록 제외지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시행규칙 제7조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물 등록을 원할 경우 관할 시·군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동물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시장·군수도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등록사항의 변경)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행 규칙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각 호의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주소변경으로 전입 신고를 한 경우 제1항의 주소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의 주소를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적정한 사육·관리)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광견병 예방 접종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개(90일이 경과된 경우에 한한다)

2.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여 지정한 동물

②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

가.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나. 동반하는 동물이 주변의 행인이나 다른 동물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택 및 공공장소에서의 준수사항

가. 사육·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사육·관리하는 동물이 큰소리로 짖거나 우는 행위로 인하여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악취 및 기생충 발생, 털 날림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많은 사람이 동시에 출입하는 실내공연장, 실내극장

2. 공중목욕탕, 찜질방

제7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또는 보호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기동물의 발생 두 수를 고려하여 동물보호센터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①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전에 그 내용을 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가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 지정은 2년으로 하며 연속 2회까지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19조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재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⑤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만료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기능)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기동물의 포획
2. 보호동물의 공고 등
3.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4.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5.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
6.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대상동물의 조치 등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감독) ① 전년도 기준으로 연간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2천 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15조 제8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半期)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유기동물의 포획) ① 도지사는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제1항에 따른 동물을 포획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 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동물의 공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호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포획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하면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바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6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으로 분양 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 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기증하는 경우에는 해당동물의 등록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 보호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

제15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도지사는 피학대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먼저 분양한다.

③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도지사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 또는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 및 공수의 등에 제13조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든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요경비의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기타 징수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유기동물 보호업무의 지원) 도지사는 유기동물 보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수수료)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50%
3.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동물을 변경 신고하는 경우 : 50%

- 5.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 : 30%
- 6.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20% (다만, 3마리부터 적용된다)

제19조(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효율적인 동물보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 1. 제7조의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 2. 제8조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 3. 제10조의 동물보호센터의 감독에 관한 사항
- 4. 제11조의 유기동물의 포획에 관한 사항
- 5. 제12조의 보호동물의 공고에 관한 사항
- 6. 제13조의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제14조의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8. 제15조의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9. 제16조의 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별표]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 관리 기준

가. 사료 등 급여

동 물 명	규 격	사료급여기준
개, 고양이	6개월 령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6개월 령 초과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기타	-	해당동물의 생태에 따라 보호센터장이 정함

※ 소요경비는 일반관리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군 실정에 맞게 산출함.

나. 인건비

① 포획비: 정부 노임 단가 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 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보호·관리비(1마리/1일): 정부 노임 단가 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 관리사 노임 액의 100분의 20이내

다. 일반운영비: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기타 보호 관리에 소모되는 물품 금액 등은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시장·군수)와 동물보호센터장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라.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도지사(시장·군수)와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가.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도지사(시장·군수)와 동물보호센터장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기타비용

가. 수송비: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나.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다. 사체처리비: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2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

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복구”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경상북도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 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시·군 지역대책본부장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도지사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도민안전실장으로 하고,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본부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 총괄반장이 된다.
6. 지원관은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
7. 실무반은 도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 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

제6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I, II, III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실·국·본부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

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은 별표7, 별표8과 같다.

②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해당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재난안전책임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6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지역재난안전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지역재난 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근무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자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근무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 근무자가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근무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① 파견 근무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파견 근무자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1조(현장상황지원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군에 현장상황지원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지원관은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시·군 대책본부의 수습상황

4. 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지원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시·군 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시·군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 시·군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군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 및 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하거나 시·군 대책본부장에게 예보·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국민 안전처장관과 법 제3조제5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4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 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매뉴얼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시·군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을 따른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재난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본청의 실·국·본부장 및 소방본부장, 정책기획관, 대변인
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대책본부회의 소집 등)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본부장은 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9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군비의 재원 부담률은 각각 도비 50퍼센트,

시·군비 50퍼센트로 한다.

제20조(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1조(재난안전대책본부 문서관리)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22조(사무의 전결사항) ①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10와 같다.

②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정상복도 주관부서
교 육 부	1.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인재개발정책관실
미래창조과학부	2. 우주전파 재난 3. 정보통신 사고 4.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정보통신과
외 교 부	5.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글로벌통상협력과
법 무 부	6. 교정시설 발생한 사고	해당실·과
국 방 부	7. 국방시설에 발생한 사고	해당실·과
행정자치부	8. 정부중요시설(도 청사) 사고	회 계 과
문화체육관광부	9.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10.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11. 위락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12. 축제현장 발생사고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해당 실·과
농림축산식품부	13. 가축 질병 및 감염병 14. 저수지 사고	축산경영과 농촌개발과
산업통상자원부	15.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6. 원유수급 사고 17. 원자력안전 사고 (파일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18. 전력 사고 19.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청정에너지산업과 청정에너지산업과 원자력산업정책과 청정에너지산업과 청정에너지산업과
보건복지부	20. 감염병 재난 21. 보건의료 사고	보건정책과
환 경 부	22.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3.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24.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25.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26. 황사	환경안전과 물 산 업 과 환경안전과 환경안전과 환경정책과
고용노동부	27.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인적사고	기업노사지원과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정상복도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28.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9. 사업용 자동차 대형사고 30. 고속철도 및 지하철 사고 3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32. 도로터널 사고 33.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34. 육상화물운송 사고 35. 항공기 사고 36. 항공운송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도시계획과 민생경제교통과 도로철도공항공과 하천과 도로철도공항공과 물산업과 민생경제교통과 도로철도공항공과 도로철도공항공과
해양수산부	37.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38. 조수(潮水) 39.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0. 해양 선박 사고(어선)	수산진흥과 해양항만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국민안전처	41.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제외) 42.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3. 화재(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포함) 44. 위험물 사고 45.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6. 다중 이용건축물 대형사고(화재는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소관부서를 말한다. 47.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48.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49. 지진 50. 화산 51. 낙뢰 52. 가뭄	도시계획과 해양항만과 대응예방과 대응예방과 생활안전과 소관부서 건축디자인과 및 소관부서 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
원자력안전위원회	53. 원자력안전 사고(주민 대피) 54.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비상대비과
문화재청	55.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유산과
산림청	56. 산불 57. 산사태	산림자원과
비고 : 재난관리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2]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차 장	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 실·국·본부장
담 당 관	재난안전상황실장
실 무 반	안전정책과에 소속된 재난안전상황실 소속 공무원이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한다.

- 비고: 1. 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지역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재난안전상황실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 비상 I 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주의보(3개 시·군 이상 발효시)

호우·대설경보(1개 시·군 이상 발효시)

나. 태풍 : 예비특보 발효시

2. 실무반 편성: 6명 + α

통제관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6+α명	
상황관리 총괄반 (6+α명)	반장(1)	담당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	재난상황관리반(5) 재난안전상황실(2) - 상황근무자 자연재난 총괄부서(2) 시설용 급복구반(1) - 도로철도공항과 기상청,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자체 상황근무(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	긴급 생활안정 지원	재난대응과(α)
	긴급통신 지원	정보통신과(α)
	피해시설 응급복구	재난대응과(α), 생활안전과(α), 친환경농업과(α), 도시계획과(α), 도로철도공항과(α), 문화유산과(α), 농촌개발과(α), 축산경영과(α), 산림자원과(α), 물산업과(α), 수산진흥과(α), 건축디자인과(α), 하천과(α), 해양항만과(α), 체육진흥과(α), 새마을봉사과(α)
	재난관리지원 지원	
	에너지공급기능 복구	청정에너지산업과(α)
	교통대책	민생경제교통과(α), 도로철도공항과(α)
	의료 및 방역	보건정책과(α)
	재난현장 환경정비	환경정책과(α), 해양항만과(α)
	자원봉사 지원·관리	새마을봉사과(α)
	사회질서 유지	경북지방경찰청(α)
	재난수습 홍보	대변인(α)
	구조·구급	소방본부 상황실(α) → 담당부서 업무 지령
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대응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 II 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경보(3개 시·군 이상 발효시)

나. 태풍 :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14+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 선정)

통 제 관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14+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4+α명)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6+α)	재난상황관리반(6) 재난안전상황실 (2) - 상황근무자 자연재난 총괄부서(2) 시설응급복구반(2) - 도로철도공항과, 친환경농업과 유관기관(α명) 여름철 : α명(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KT, 한국가스공사) 겨울철 : α명(한국도로공사)
	상황보고서 작성 (2+α)	자연재난 총괄부서(2+α)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3+α)	자연재난 총괄부서(2+α), 재난안전상황실(1+α)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중앙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행정지원반 (2+α)	감사관, 자치행정과(2+α)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 생활안전 지원	재난대응과(α)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명)	긴급통신 지원	정보통신과(α)
	피해시설 응급복구	재난대응과(α), 생활안전과(α), 친환경농업과(α), 도시계획과(α), 도로철도공항과(α), 문화유산과(α), 농촌개발과(α), 축산경영과(α), 산림자원과(α), 물산업과(α), 수산진흥과(α), 건축디자인과(α), 하천과(α), 해양환경과(α), 체육진흥과(α), 새마을봉사과(α)
	재난관리지원 지원	
	에너지공급기능 복구	청정에너지산업과(α)
	교통대책	민생경제교통과(α), 도로철도공항과(α)
	의료 및 방역	보건정책과(α)
	재난현장 환경정비	환경정책과(α), 해양환경과(α)
	자원봉사 지원·관리	새마을봉사과(α)
	사회질서 유지	경북지방경찰청(α)
	재난수습 홍보	대변인(α)
	구조·구급	소방본부 상황실(α) → 담당부서 업무 지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3명)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3) : 지방구도관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3. 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반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
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
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
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
할 수 있다.

□ 비상 Ⅲ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광역적인 호우·대설정보 발령 시 또는 전국적 대규모피해 발생시

나. 태풍 : 광역적인 태풍정보 발령 시 또는 전국적 대규모피해 발생시

2. 실무반 편성: $26 + \alpha + \beta$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제관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26 + \alpha + \beta$ 명	
상황관리 총괄반 ($26 + \alpha$ 명)	반장(1)	담당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9 + \alpha$)	재난상황관리반(9) 자연재난 총괄부서(2) 시설응급복구반(2) - 도로철도공항과, 친환경농업과 긴급생활안전지원반(2) - 사회복지과 재난수습홍보(1) - 대변인 교통대책반(2) - 민생경제교통과 유관기관(α 명) 여름철 : α 명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KT, 한국가스공사, 국방부) 겨울철 : α 명 (한국도로공사)
	상황보고서 작성($3 + \alpha$)	자연재난 총괄부서($2 + \alpha$), 소관시설물부서($1 + \alpha$)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9 + \alpha$)	자연재난총괄부서($2 + \alpha$), 재난안전상황실($1 + \alpha$), 농촌개발과($1 + \alpha$) 환경정책과($1 + \alpha$), 물산업과($1 + \alpha$), 산림자원과($2 + \alpha$), 건축디자인과($1 + \alpha$)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중앙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운영 지원
	행정지원반($4 + \alpha$)	감사관, 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4 + \alpha$)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안전 지원	재난대응과(α)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기관(α 명)	긴급통신 지원	정보통신과(α)
	피해시설응급복구	재난대응과(α), 생활안전과(α), 친환경농업과(α), 도시계획과(α), 도로철도공항과(α), 문화유산과(α), 농촌개발과(α), 축산경영과(α), 산림자원과(α), 물산업과(α), 수산진흥과(α), 건축디자인과(α), 하천과(α), 해양항만과(α), 체육진흥과(α), 새마을봉사과(α)
	재난관리지원지원	수산진흥과(α), 건축디자인과(α), 하천과(α), 해양항만과(α), 체육진흥과(α), 새마을봉사과(α)
	에너지공급기능복구	청정에너지산업과(α)
	교통대책	민생경제교통과(α), 도로철도공항과(α)
	의료 및 방역	보건정책과(α)
	재난현장환경정비	환경정책과(α), 해양항만과(α)
	자원봉사지원·관리	새마을봉사과(α)
	사회질서 유지	경북지방경찰청(α)
	재난수습홍보	대변인(α)
	구조·구급	소방본부 상황실(α) → 담당부서 업무 지령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 명)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 : 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3. 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반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
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
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중앙대책
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통제관 (재난수습·관리·구·본부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담당관 (재난수습 주관 과장)	○ 통제관 보좌 및 상황총괄반장 역할 수행
지원관 (생활안전과장)	○ 총괄조정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원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11+a+β명
상황총괄반 (11+a명)	반장(1)
	담당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 (5+a)
	재난상황관리반 (5+a) 재난안전상황실(2)-상황근무자, 재난수습 주관부서(2), 사회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관련부서(a)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a명)	상황보고서 작성 (3+a)
	재난수습 주관부서(2), 사회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관련부서(a)
	행정지원반 (2+a)
	사회재난 총괄부서(1), 자치행정과 직원(1+a) ※주요인사 방문시 의견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a명)	긴급 생활안정 지원
	재난대응과(a)
	긴급통신 지원
	정보통신과(a)
	피해시설 응급복구
	수습주관부서(a)
	에너지공급기능 복구
	청정에너지산업과(a)
	재난관리지원 지원
	생활안전과(a), 수습주관부서(a)
	교통대책
	민생경제교통과(a), 도로철도공항과(a)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명)	의료 및 방역
	보건정책과(a)
	재난현장 환경정비
	환경정책과(a), 해양항만과(a)
	자원봉사 지원·관리
	새마을봉사과(a)
	사회질서 유지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명)	경북지방경찰청(a)
	재난수습 홍보
	대변인(a)
구조·구급	
소방본부 상황실(a) → 담당부서 업무 지령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중 사고 관련 기관(β)	

※ 비고 :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 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자연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6조제1항제2호 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비 고
통제관		본부장·차장 보좌,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		본부장·차장 및 통제관 보좌, 실무업무 총괄	
① 재 난 상 황 관 리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 상황판단 회의 주관 2.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3.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6. TV 방송 모니터링 7. 댐·저수지 수위방류량, 주요도로 소통통제, 국립공원 입산통제 관련 정보수집·분석·전파 8. 상황전파시스템 및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9. 대책본부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재난수습 주관 및 총괄부서
	상황보고서 작성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각종 회의 자료 및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분석 및 관련기관 제공 4.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관리 5.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6.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7. 민심동향, 미답사례 등 확인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등 준비·운영 2. 현장상황 관리관 및 재난현장 대응인력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및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5.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6.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7.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8. 본부장 등 재난현장 방문일정 수립 9. 상황근무자 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0.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1.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12. 댐·저수지 방류량, 펌프장 가동 등 홍수정보 분석·대응 13. 중앙 및 경상북도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관리	
	행정지원	1.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2.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자치행정국

구 분	담 당 업 무	비 고
② 긴급생활 안전지원	1.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2.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3.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4.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5.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6.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7.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도민안전실 · 복지건강국
③ 긴급 통신지원	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시·군 복구현황 파악	자치행정국
④ 시설 응급복구	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시·군 응급복구 현황 파악	해당부서
⑤ 에너지기능 복구	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시·군 응급복구 현황 파악	창조경제산업실
⑥ 재난관리 자원지원	1. 국가·지자체·관계기관 단체, 민간 자원기능 물자 및 자원 사전 파악 2. 재난발생 지역 응급복구 장비·인력·자재 투입현황 파악 3. 응급복구용 장비·인력·자재 부족시 긴급지원 요청	생 활 안 전 파 시설관리부서
⑦ 교통대책	1. 교통통제 상황 모니터링 2. 교통 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3. 교통 두절구간 통행 재개 및 소통 대책 지원	민생경제교통과 도로철도공항과
⑧ 의료·방역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 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복지건강국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 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처리실태 파악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시·군 복구현황 파악	환경산업자원국 · 동해안발전본부

구 분	담 당 업 무	비 고
⑩ 사회질서 유지	1.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2.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3.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4. 재난발생(우려) 지역순찰 강화, 출입통제 5. 재난발생(우려) 지역 주민 대피 지원 6. 재난발생(우려) 지역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	지역균형건설국 · 경북도경찰청
⑪ 자원봉사 관리	1.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2. 응급복구 등 대민 지원 활동 추진 3. 피해지역 안전점검 및 무상 수리 지원 요청 등 추진	자치행정국
⑫ 수색·구조·구급	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소방본부 상황실 ↓ 담당부서 업무지령
⑬ 재난수습 홍보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정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관련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4.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언론사 등이 요청하는 재난 관련 각종 정보 제공 총괄	대변인
관계기관	자연재난관리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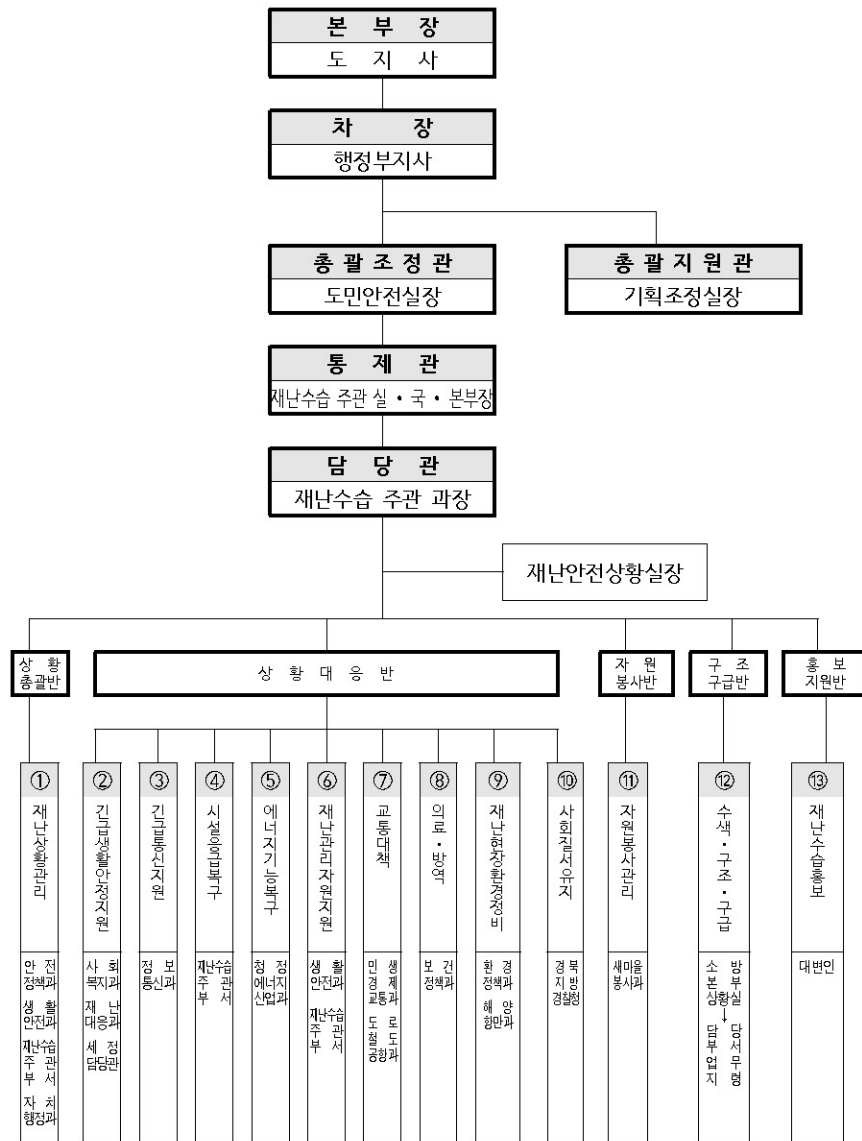
[별표 6]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6조제1항제2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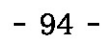
구분	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비 고
	세부 기능	주요 업무와 역할	
상황 총괄 반	① 재난상황 관리 기능 (상황관리팀)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관계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관리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TV 방송 모니터링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본부장 등 현장방문 일정수립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 대책본부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재난수습 주관 및 총괄부서
	(상황보고서 작성팀)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각종 회의자료 및 보고서 작성	〃
	(행정지원팀)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 상황근무자 복무 단속	자치행정국
협업 기능	② 긴급 생활안정 지원기능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도민안전실 · 복지건강국
	③ 긴급통신 지원기능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자치행정국
	④ 피해시설 응급복구 기능	○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해당부서

구분	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비고
	세부 기능	주요 업무와 역할	
협업 기능	⑤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창조경제 산업실
	⑥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옹원 및 배치 등 지원	도민안전실
	⑦ 교통대책 기능	○ 교통 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일 자리 민생본부
	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지원 기능	○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제독 및 기동방역·제독반 편성·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복지건강국
	⑨ 재난현장 환경 정비기능	○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환경산림 자원국 · 동해안 발전본부
	⑩ 사회질서 유지 기능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지역균형 건설국 · 경북도 경찰청
	⑪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기능	○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자치행정국
	⑫ 재난 지역수색· 구조·구급 기능	○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소방본부 상황실 ↓ 담당부서 업무지령
	⑬ 재난수습 홍보기능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대변인

재난안전대책본부(사회재난) 실무반 구성도(제6조제1항제2호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자연재난) 실무반 구성도(제6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9]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제19조제2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은 국고 부담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1.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kg)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수산물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3.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확인
4.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5. 그 밖에 사항	법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0]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22조 관련)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총괄 조정관	차장	본부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현장관리관 파견		○			
		유관기관 파견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지대본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발령		○			
3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상황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재난안전대책 본부 회의	회의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 [별지 제1호 서식]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 내용	피해발생위치:
	피해 시설명:
	피해 물량: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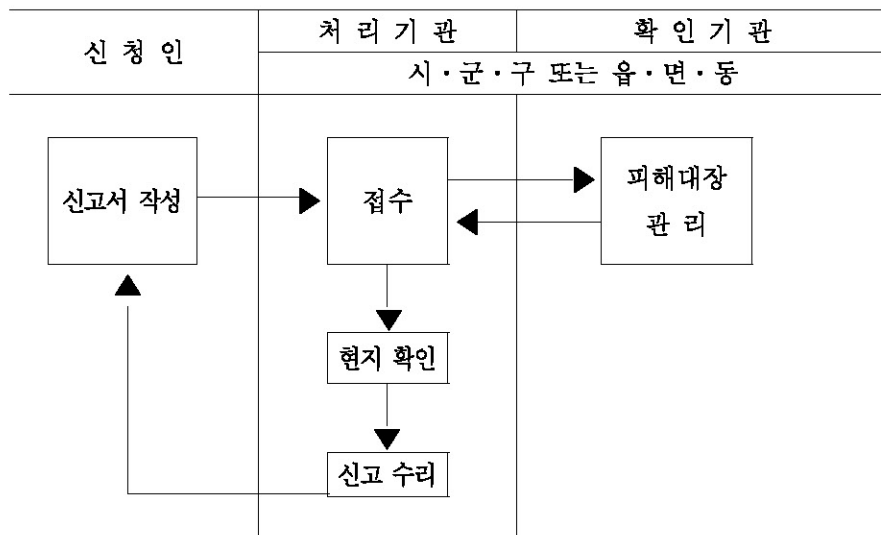
첨부서류	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관리번호:]

피해대장

확 인 자	증양 직	성명	(인)
	시도 직	성명	(인)
담당과장	직	성명	(인)
조 사 자	직	성명	(인)

① 총괄현황

구 분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	천원

② 피해·복구내역

피해내역	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 복구비 산출근거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③ 피해현황 사진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

경상북도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2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2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4조로, 제4조를 제5조로, 제5조를 제3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공동실습소 명칭란 중 “경북 자동차고등학교 부설 경상북도
공업계고등학교자동차공동실습소”를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부설 경상북도 공업계 고등학교 자동차 공동실습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조 (생략)</u> <u>제4조 (생략)</u> <u>제5조 (생략)</u> <u>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u> <u>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u> <u>교육감이 정한다.</u>	<u>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u> <u>제5조 (현행 제4조와 같음)</u> <u>제3조 (현행 제5조와 같음)</u> <u>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u> <u>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u> <u>정한다.</u>												
[별표 1] 공동실습소 명칭 및 위치	[별표 1] 공동실습소 명칭 및 위치												
<table><tr><th>명칭</th><th>위치</th><th>설치연도</th></tr><tr><td><u>경북자동차고등학교</u> <u>부설 경상북도 공업계</u> <u>고등학교 자동차 공동</u> <u>실습소</u></td><td>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일연로 93</td><td>1997</td></tr></table>	명칭	위치	설치연도	<u>경북자동차고등학교</u> <u>부설 경상북도 공업계</u> <u>고등학교 자동차 공동</u> <u>실습소</u>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일연로 93	1997	<table><tr><th>명칭</th><th>위치</th><th>설치연도</th></tr><tr><td><u>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u> <u>부설 경상북도 공업계</u> <u>고등학교 자동차 공동</u> <u>실습소</u></td><td>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일연로 93</td><td>1997</td></tr></table>	명칭	위치	설치연도	<u>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u> <u>부설 경상북도 공업계</u> <u>고등학교 자동차 공동</u> <u>실습소</u>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일연로 93	1997
명칭	위치	설치연도											
<u>경북자동차고등학교</u> <u>부설 경상북도 공업계</u> <u>고등학교 자동차 공동</u> <u>실습소</u>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일연로 93	1997											
명칭	위치	설치연도											
<u>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u> <u>부설 경상북도 공업계</u> <u>고등학교 자동차 공동</u> <u>실습소</u>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일연로 93	1997											

경상북도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2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상북도교육감”을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무처리”를 “사무 처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전자입력”을
“전자 입력”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공인인영”을 “공인 인영”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5밀리미터”를 “5밀리미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화일”을 “파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화일”을
“파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을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의 원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인폐기

내역"을 "공인 폐기 내역"으로 하며, "공인폐기 공고문"을 "공인 폐기 공고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증인"을 "사용 증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등록, 재등록"을 "등록·재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폐기사유"를 "폐기 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을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폐기공인의 공인명"을 "폐기 공인의 이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공고기관"을 "공고 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4호 중 "직인："을 "직인："으로 한다.

제10조 중 "집무시간"을 "집무 시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종류 및 비치) ①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적인으로 구분한다.	제2조(종류 및 비치) ① 경상북도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
④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한 적인을 가진다.	④ ----- 사무 처리-----
⑤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경상북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민원사무전용 적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⑤ ----- 교육감-----
⑥ 각급 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그 공인의 인영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 전자 입력-----
제4조(규격 및 글씨 등) ④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규격 및 글씨 등) ④ 공인인영 -----

현행	개정안
제5조(각인) ② 민원사무전용 직인에는 하단부에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사무전용”이라고 새겨야 한다.	제5조(각인) ② ————— ————— 5밀리미터 ————— —————.
제6조(등록 및 관리) ③ 전자이미지 공인은 문서담당부서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담당 부서에서 전자 이미지 공인 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 이미지 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및 관리) ③ ————— ————— ————— ————— ————— 파일 —————.
④ 문서담당 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공인의 인영을 전자 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 이미지 공인 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 ————— ————— ————— ——— 파일 ————— ————— ——.
제7조(재등록 및 폐기)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인의 분실·마멸 등으로 갱신이 필요하거나 전자 이미지 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6조에 따라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재등록 및 폐기) ① ————— ————— —————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 ————— ————— —————.

현행	개정안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u>공인폐기</u>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관할 기록관에 <u>공인폐기 공고문</u>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즉시 <u>사용중인</u> 전자 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공고) 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u>폐기사유</u> 2. 등록·재등록 공인의 <u>최초사용 연월일</u> 또는 <u>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u>	② ----- ----- <u>공인 폐기</u> <u>내역</u> ----- ----- <u>공인 폐기 공고문</u> ----- -----. ③ ----- ----- ----- ----- <u>사용 중인</u> ----- ----- ----- -----. 제8조(공고) ① ----- <u>등록·재등록</u> ----- ----- ----- -----. ② (현행과 같음) 1. ----- <u>폐기 사유</u> 2. ----- <u>최초사용 연월일</u> 또는 <u>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u>

현행	개정안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3. _____ 폐기 공인의 이름 _____
4. 공고기관의 장	4. 공고기관 _ _ _
제9조(공인 보관자) 공인의 보관자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제9조(공인 보관자) _____ _____.
4.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직인 : 총무담당. 다만, 총무담당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자	4. _____ 직인: _____ _____
제10조(보관 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잠금 장치를 하여 두어야 한다.	제10조(보관 방법) _____ _____ 집무 시간 _____ _____.

경상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2월 1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안전행정부령)”을 “「공무원증 규칙」
(총리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영”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복장 등)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u>안전행정부령</u>)을 준용한다.	제12조(복장 등) ② ----- ----- --- (<u>총리령</u>) -----.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② <u>영</u> 제7조 제1항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② 「 <u>지방공무원 복무규정</u> 」(이하“ <u>영</u> ”이라한다) ----- ----- ----- ----- -----.
제15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 <u>지방공무원 복무규정</u> 」(이하 “ <u>영</u>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u>영</u> ----- ----- ----- ----- -----.

二 수정안

-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6년 1월 25일

제 출 자 : 문화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금 지원 범위 제한(치료비의 실제 본인부담액 10만원 미만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가능한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 제7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함

3. 수정안 : 불입

4. 수정안 조문대비표 : 불입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제7조(인명 피해 보상의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 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4.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5. <u>치료비의 실제 본인부담액이</u> <u>10만원 미만인 경우</u> 6. 시·군 조례 및 다른 법령에 의해 치료비, 사망위로금 등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제7조(인명 피해 보상의 제외) ----- -----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본문 삭제> 5. 시·군 조례 및 다른 법령에 의해 치료비, 사망 위로금 등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본인부담액 10만원 미만 제외규정을 삭제하여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성 있음.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 및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일상생활 및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민”이란 「주민등록법」 상 도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인명 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피해액 산정)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 등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4조(피해보상) ①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산정한 연간
총 피해금액의 50%에 대하여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상의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농가의 농외소득이 전체 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2. 법령 등에서 경작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3.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4. 제4조에 따라 해당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등 예산지원을 받은 경우

제6조(인명 피해 보상대상) ①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보상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법상 경상북도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2. 농·임업상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을 보상한다.

제7조(인명 피해 보상의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4.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5. 시·군 조례 및 다른 법령에 의해 치료비, 사망위로금 등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제8조(인명 피해액 산정) 인명 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과 사망으로 인한 위로금으로 한다.

제9조(인명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명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지급한다. 다만, 인명 피해를 입은 도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대표에게 지급한다.

② 보상 및 사망으로 인한 지원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치료비 : 최대 100만원까지
2. 사망시 위로금 : 500만원
3. 치료중 사망시에는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인명 피해 보험가입) ①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보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피해 보상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
4. 피해보상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6. 1. 25.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수정 이유

- 개정안의 “「공무원증 규칙」(총리령)” 내용 중에서 “(총리령)”은 통상적인 표기방식으로 볼 때, 불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에서 “(총리령)”을 삭제하여 “「공무원증 규칙」”으로 수정하고자 제안함

2. 주요 내용

-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에서 “(총리령)”을 삭제하여 “「공무원증 규칙」”으로 수정(안 제12조제2항)

3. 수 정 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개정안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공무원증 규칙」”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복장 등) ① (생략)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2조(복장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 (안전행정부령)을 준용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 (총리령)을 준용한다.	② ----- ----- 「공무원증 규칙」 을 준용한다.

二 동 의 안

-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변경고시안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변경고시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6년 2월 1일

[붙임1]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변경고시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고등학교 학교군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시부터 적용한다.

[별지]

[별표1]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학교군명	지역구분	고 등 학 교 명
제1학교군	남구, 북구	포항고등학교 두호고등학교 포항장성고등학교 포항이동고등학교 포항여자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포항중앙고등학교 동지고등학교 세명고등학교 유성여자고등학교 포항중앙여자고등학교 포항영신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동지여자고등학교 (14교)

[별표2]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고등학교 특수지 학교

지역구분	고 등 학 교 명
남구, 북구	죽장고등학교 오천고등학교 영일고등학교 (3교)

[붙임2]

신구 대비표

현 행			변 경 안		
[별표1]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별표1]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학교군명	지역구분	고등학교명	학교군명	지역구분	고등학교명
제1 학교군	남구, 북구	포항고등학교	제1 학교군	남구, 북구	포항고등학교
		두호고등학교			두호고등학교
		포항장성고등학교			포항장성고등학교
		포항이동고등학교			포항이동고등학교
		포항여자고등학교			포항여자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포항중앙고등학교			포항중앙고등학교
		동지고등학교			동지고등학교
		세명고등학교			세명고등학교
		유성여자고등학교			유성여자고등학교
		포항중앙여자고등학교			포항중앙여자고등학교
		포항영신고등학교			포항영신고등학교
		〈추가〉			세화고등학교
		〈추가〉			동지여자고등학교
		(12교)			(14교)

현 행		변경안	
[별표2]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고등학교 특수지 학교		[별표2]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고등학교 특수지 학교	
지역구분	고 등 학 교 명	지역구분	고 등 학 교 명
남구, 북구	세화고등학교	남구, 북구	〈삭제〉
	죽장고등학교		죽장고등학교
	오천고등학교		오천고등학교
	영일고등학교		영일고등학교
	(4교)		(3교)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282회 임시회)



2016. 3. 인쇄 / 2016. 3.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 화 : 054-880-5165

FAX : 054-880-5169



<비매품>